

학습자료

(경비원 직무교육(정신교양B)-T)

■ 1차시 산업안전보건법 교육

*작업 중지

- 급박한 위험,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
- 필요한 안전·보건상의 조치 취한 후 작업 재개
- 근로 중 급박 위험시 대피하고 상급자에게 보고
- 작업 중지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, 5,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함

*산업안전보건법

-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,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세 가지: ①유해/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전문 기술성, ②복잡/다양성, ③강행성/규정성

■ 2차시 근골격계질환 예방

*근골격계질환

- 정의: 목, 어깨, 허리, 상·하지의 신경/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
- 원인: 부적절한 작업 자세, 반복적인 동작,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, 작업환경 불량, 빠른 작업속도
- 근골격계예방 운동법: 다리 교대 운동, 근육강화 운동, 스트레칭, 건강과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
-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대책 실시만이 대안이다.

*근골격계질환의 발생요인

- 작업환경 불량
- 빠른 작업속도
- 과다한 작업량이나 많은 작업시간 또한 발생요인이 될 수 있다

■ 3차시 MSDS와 GHS

*MSDS 제도의 도입 배경

- 근로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
-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
- 화학물질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와 유해성 자료의 부실, 국가 차원의 종합적, 체계적 화학물질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
- 화학물질 관리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고자

*GHS

- 화학물질 분류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(Globally Harmonized System on Classification and Labeling for Chemicals)으로써,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분류하고,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.

*GHS 경고표지 부착 방법

- 대상 화학물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유해, 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GHS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.
- 화학물질을 사용,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 부착하여야 한다.
- 화학물질 함유제제 단위로 용기 및 포장에 인쇄물 등을 부착한다.
-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다.

*GHS의 이행으로 인한 기대효과

- 국제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유해, 위험성 정보 전달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과 환경보호가 강화
- 기존 시스템이 없는 국가들에게 안정된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제공
- 화학물질의 국제 교역이 용이
- 화학물질을 중복해서 시험하고 평가할 필요성이 감소

■ 4차시 소방안전교육

*연소의 3요소

- 산소
- 점화원
- 가연물

*화재의 특성

- 성장성
- 불안전성
- 겨울과 봄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

***화재예방 대책**

- 쓰레기통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한다.
- 노후된 전열 기구의 사용 금지, 적정 용량의 퓨즈를 사용한다.
- 가스기구를 사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누설검사를 실시하고,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근다.
- 가스 누설 시는 중간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후, 바닥에 깔려 있는 가스를 비로 쓸어내 듯이 밖으로 내보내고 주변의 불씨를 제거하며, 전기기구를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.

***소화기**

- 소화기는 각 층별, 각 실별, 대상물별 능력단위 이상으로 설치하며,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,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가 되도록 바닥으로부터 1.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라는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.

***올바른 소화기 사용법**

-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손잡이를 불쪽으로 접근한다.
- 손잡이 앞쪽에 있는 안전핀을 힘껏 뽑는다.
- 불길 주위에서부터 빗자루로 쓸듯이 골고루 방사한다
- 바람을 등지고 화점을 향해 호스를 빼들고 손잡이를 움켜쥐어야 한다.

■ 5차시 유형별 안전관리 대책

***교통사고의 대비 요령**

-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 시 사고지점에서 빠져 나와 대피해야 한다.
- 화재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부상자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.
- 구조대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구조에 참여하지 말고 사고현장에서 물러나도록 한다.
- 사고현장에서는 유류나 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.

***붕괴사고에 대한 대비 방법**

- 위험지역 또는 불안정한 물체에서 멀리 떨어지고, 유리파편 등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.
- 공기 공급이 잘되는 창문이나 선반이 없는 벽 쪽, 낙하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튼튼한 테이블 밑에서 자세를 낮추고 구조를 기다린다.
- 안전지대에 있는 경우는 그 곳에 머무르고, 부서진 계단이나,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.

-가스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, 성냥이나 스토브 등을 켜지 말고 손전등을 사용해야 한다.

*수상안전

-레저 활동을 할 경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.

-활동 전에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고, 활동 중에도 현지 기상변화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, 기상 불량 시 무리한 레저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, 천둥번개가 칠 때에는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.

-레저 활동 전에 레저기구의 연료가 충분한지,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, 엔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.

-비상연락 수단과 조난신호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, 바다에서는 휴대폰이나 다른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
■ 6차시 성폭력 예방교육

■ 성폭력(Sexual violence)

-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**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**하는 모든 성적 행위.

-피해자는 저항여부에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한다.

-법률에서는 주로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적 행위 즉,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의미하고 있다

-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,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한다.

■ 성폭력 발생 원인

-잘못된 성 인식 : 성 차별과 성별 고정관념, 성별에 따른 이중적인 성 윤리

-성인지 감수성의 차이 : 친밀감의 표현, 성적 말과 행동에 대한 인식 차이, 존중과 배려의 부족

-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 : 성별, 연령, 사회경제적 지위, 인종 등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

■ 성폭력 범죄자 처벌 및 관리강화

-전자발찌 부착

19세 미만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단 1회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한다.

-성범죄자 약물치료(화학적 거세)

재범우려가 있을 경우, 성범죄자 약물치료

-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

-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

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세주소 공개, 모바일 알리미 구축 등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개선 시행하고 있다. 성범죄자 알리미, 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500만 가구 대상으로 한 우편고지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다.

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• 지원제도

- 형사사법 절차상 피해자 보호 강화
- 피해자 중심 지원체계 확충
-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
-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인프라 구축

■ 성폭력 제로를 위해

- 성인지 감수성 훈련
- 자기표현과 소통훈련
- 신뢰관계 구축과 교육

■ 성폭력 사건 발생시 법적 처리절차

- 전문기관에 상담 및 신고
- 경찰 수사
- 검찰조사
- 법원 재판

■ 7차시 성매매 예방교육

■ 성매매의 정의

-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란 ‘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·약속하고’, ‘성교 및 구강·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(유사)성교행위’로 정의한다.
- 선불금 등의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· 약속하고 하는 성교나 유사성교행위
- 성매매를 알선·권유·유인하거나 또는 강요하고 장소를 제공하거나 대상자를 모집·이동·은닉하는 업주, 포주 등의 성매매 알선 행위
-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·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청소년의 몸과 성적행위를 얻기 위해 돈뿐만 아니라 음식, 잠자리, 재화 등을 제공하는 행위

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

- "성매매"란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
- "성매매알선등행위"란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위
- "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"란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
- "성접대"란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 · 권유하는 행위

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가.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

나.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

한 자

다. 친족 · 고용 그 밖의 관계로 타인을 보호 · 감독하는 것을 이용해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

라.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자

■ 성매매는 왜 문제인가요?

-남성이 여성의 성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차별과 여성인권의 문제

-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문제

-나, 우리 가족, 이웃 등 모두와 관련된 문제

■ 성매매 근절 대책

-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성매매에 대한 우리의 편견, 통념, 의식을 바꿔야 한다.

-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는 왜 성매매가 문제인지 고민하고 서로 토론해야 한다.

-성구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.

-성매매는 남성이 여성의 성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차별과 여성인권의 문제이며,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문제입니다. 또한 나, 우리 가족, 이웃 등 모두와 관련된 문제라 할 수 있다.

따라서 성매매 허용하는 사회를 비판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을 길러야한다.

■ 성매매 사건 처리 흐름도

성매매 피해자 및 참고인은 상담소 · 지원시설에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상담소 · 지원시설은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. 성매매 피해자 및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조사에 들어가게 되며, 법원은 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다.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.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친족 등에게 통지하고, 신변보호, 수사의 비공개, 상담소 등에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 단, 피의자나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. 성매매자의 경우 가정법원으로 보호사건 송치, 또는 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, 법원은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. 가정법원에서는 조사 ·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내리거나, 법원에서 조사 · 심리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. 성매매알선 등 행위,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경우 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, 법원에서는 조사 · 심리하여 판결을 내려 몰수 및 추징을 집행한다.

■ 8차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

*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(내부관리계획 수립,운영 방법)

-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 관리방안을 수립하고,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한 수집 출처 고지 절차 수립 및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.

-개인정보 불필요 여부 점검, 파기 절차/ 방법 수립 및 관련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.

-취급자 PC에 고유식별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조치하고, 저장에 필요한 경우 암호화하도록 수립하여 운영한다.

-내부관리 계획,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보호책임자를 공개한다.

*비밀번호 관리

-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한다.

-비밀번호는 최소 10자리의 경우 영대문자, 영소문자, 숫자,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으로 구성하며, 최소 8자리의 경우에는 영대문자, 영소문자, 숫자, 특수문자 중 3종류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.

-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생성해야 한다.

-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6개월 마다 주기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. 또한 두 개의 비밀번호를 교대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.